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41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 박성훈·임이자·이상휘

이헌승 • 박성민 • 박충권

박수영 · 김종양 · 김소희

김승수 · 김대식 · 이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동 이 저해되며 상속세 납부 여력이 없는 기업은 경영권, 지분 매각 등으 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해외 투기자본에 노출 위험을 확 대시킬 우려가 있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의 크기는 경영 실적, 대외 위험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행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과세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취약함.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고유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 고령화로 다음 세대에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은 저조한 실정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양한 사업체가 세대를 넘어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장수기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 및 증여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 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되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 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활 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18조의2제1항, 제63조제3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 견기업"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가업[<u>대통령령으</u>	<u>대통령령으</u>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		
<u>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u> (상	<u>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u>		
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			
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			
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 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 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 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